



비밀 유지 각서

마이스터번역원은 _____(이하 "의뢰인"라 칭함)와의 번역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숙지, 동의하며 엄격히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1. 번역 업무를 위해서 의뢰인이 마이스터번역원에게 제공하는 문서 및 정보(이하 "대외비"라 칭함)는 엄격히 비밀로 다루어져야 할 중요 정보로서, 마이스터번역원은 본 비밀유지각서에 의하여 대외비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1-1. '대외비'라 함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표현되고 쓰여진 모든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말하며, 번역이 진행되는 동안 알게된 의뢰인의 사업에 관한 아래의 정보도 포함된다.

- ① 생산(제작)기술 및 생산(제작)방법
- ②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와 자료
- ③ 교육, CS, 출장, 자문 등의 행위를 통해 습득한 모든 정보와 자료
- ④ 영업정보, 판매방법, 거래상의 정보와 자료
- ⑤ 특허권에 침해가 될 우려가 있는 정보사항, 발명, 발상, 지식과 축적된 기술 활용시 나타나는 모든 정보와 자료
- ⑥ 서면, 구술, 이미지, 제품, 소프트웨어, 서비스 마케팅, 금융에 포함되는 정보와 자료
- ⑦ 거래비밀로 오인되는 사건 및 독점에 관한 비밀자료
- ⑧ 의뢰인의 이익에 해가되는 행위

2. 마이스터번역원은 대외비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외부에게 공개, 누설되지 않도록 대외비의 보관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의뢰인과 명시적으로 허락한 본 업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3. 마이스터번역원은 본 업무가 완료 또는 종료, 의뢰인의 취소, 철회 등으로 인해 본 업무의 조기종료 하였을 경우 의뢰인이 원할시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하여야 한다.

4. 마이스터번역원과 대외비를 의뢰인에게 명시적으로 정한 바에 따르지 않고 남용, 오용하거나 본 각서에 의한 비밀유지의무를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한 모든 손해, 클레임에 대하여 (주)마이스터번역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비밀 유지 각서

5. 본 업무에 따라 대외비의 제공은 대외비에 수반되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허락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지 않은 이상 향후의 사업, 제휴관계 등에 대한 약속이나 보장 또는 이를 암시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6. 본 각서에 규정된 서명자의 의무와 책임은 의뢰인의 사전 승인이 없는 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속적으로 유효하다.
7. 본 각서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마이스터번역원 회사 소재지의 지방법원으로 정하며 본 각서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각서를 2부 작성, 마이스터번역원과 서명 날인한 후 의뢰자에게 제출하며 1부는 보관한다.

201* 년 **월 **일

마이스터 번역원 대표 원희주 (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746-5 서일빌딩 612